



2006년도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 신청요강

2006. 3.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주요사항 요약 및 신규대비표

구분	2005년	2006년	비고
1. 지원예산	○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사업 : 3,000백만원	○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 3,000백만원	
2. 지원분야	○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 강좌수요 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 과정상 정규과 목으로 설정(예정)되어 있으 면서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좌동	
3. 지원대상	○ 보호학문분야에 적합한 전문 학자	○ 보호학문에 적합한 시간강사	
4. 지원형태/규모 (년/과제당)	○ 연 2,460 만원 - 강의지원비 : 2,160 만원 - 연구활동비 : 100 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 만원	○ 연 2,800 만원 - 강의지원비 : 2,400 만원 - 연구비 : 200 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 만원	
5. 지원기간	○ 1년	좌동	
6. 심사절차	○ 요건심사 -> 전공심사 -> 종합심사	좌동	
7. 연구결과 발표물제출	○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좌동	

차 례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1
1. 사업목적	1
2. 지원방향	1
II. 사업내용	1
1. 지원분야 및 대상	1
2. 지원예산	2
3. 지원규모 및 기간	2
III. 신청	2
1. 신청자격	2
2. 신청기간	2
3. 신청방법	2
4. 온라인 신청절차	3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5
IV. 심사 및 선정.....	6
1. 심사절차	6
2. 심사방법 및 내용	7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9
1. 연구비 지급	9
2. 연구비 관리	9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9
1.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 및 점검	9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10
VII. 간접연구비 지원	12
VIII. 기타사항	12
붙임 1.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표	
2.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3. 강의·연구계획서	

I. 사업목적 및 지원방향

1. 사업목적

- 학문의 종다양성 보호
- 소외학문, 희귀학문 분야의 연구지속성 담보 및 대학 교육내용의 균형성 유지

2. 지원방향

-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연구와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강화
- 여성신청자 우대 지원

II.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인문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자연과학분야는 인문사회와 학제적인 경우를 우선함
-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개설되어야 하나, 강좌 수요가 적어 전임교원의 채용이 곤란한 분야
- 대학의 교과과정상 정규과목으로 설정(예정)되어 있으면서 기초학문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

나. 지원대상 : 보호학문분야에 적격한 시간강사(신청자격 참조)

다. 지원형태

- 강의부담금 전액을 지원비에 포함하여 지급함.
- 규정된 수 이하의 학생이 강의 신청을 할 경우에도 폐강해서는 안됨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2. 지원예산: 29억원(105과제 내외)

3.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지원규모 : 1인당 연 2,800만원이내

○ 강의지원비 : 연 2,400만원(매월 분할지급)

○ 연구비 : 200만원

○ 강의기관지원비 : 200만원

※ 강의기관지원비는 연구자가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인정됨

※ 선정과제에 대해 소속기관에서는 강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

나. 지원기간 : 1년

※ 연구개시일 : 9월 1일

III. 신청

1. 신청자격

○ 보호학문분야의 강의를 해당 대학의 2006년 2학기에 확정(예정)된 자

○ 보호학문분야연구지원사업 기 수혜자도 신청가능 함

※ 전임교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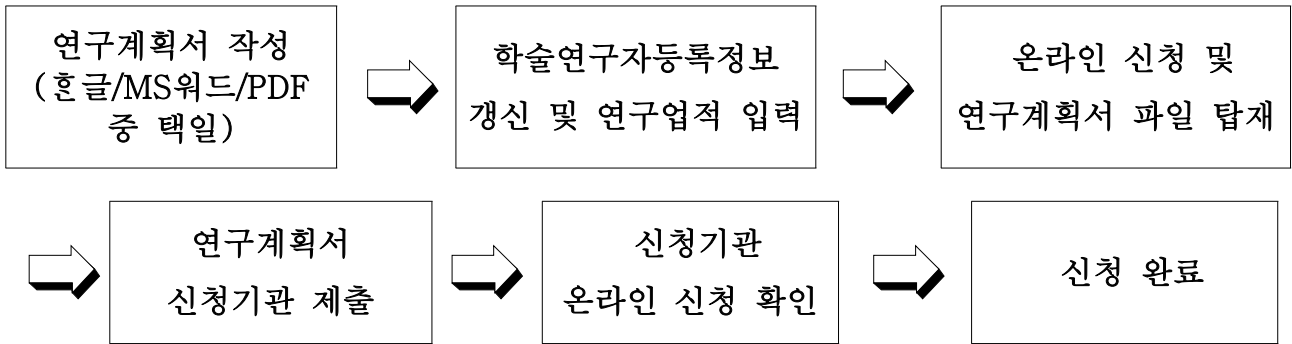
※ 대우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단, 시간강사와 여건이 동일할 경우 추천자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

※ 전일제(full-time) 취업자는 제외

2. 신청기간 : 2006. 4. 21(금) ~ 4. 27(목)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재단 홈페이지 「학술연구자정보」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을 취소하시고 다시 신청하여야 함)
- 2) 온라인 신청시 연구계획서 작성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훈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 하여야함 (PDF 파일로 탑재하는 것을 권장함)
- 3)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자격으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단,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학술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온라인 신청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함)
- 4) 시간강사는 연구지원 신청기관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와 연구비 신청과 선정 후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과 선정 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5) "연구기기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구입년도, 기기명, 기기사양, 보유수량)을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를 통하여 파악하여 온라인 신청시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지원 신청에 결격사유가 없는 연구자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사항"을 입력하고, "연구계획서" 파일을 작성하여 탑재하여야 하며, 접수 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를 통한 연구

- 비 신청은 제한함 부득이 신청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함
- 3) "연구기기비" 신청시 동일 또는 동종 기기의 소속기관 보유 현황(기기명, 기기사양, 구입년도, 보유수량) 및 사유를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하여야 함
 - 4) 연구비 산출시 특정 세부항목(연구참여 수당 제외)이 전체 연구비의 70%를 초과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5) 학술단체를 통하여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비치장소 포함)을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에서 입력해야 함
-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 온라인 신청 및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온라인 신청 후

- 1) 연구자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력내용(강의 및 연구계획서 1부포함)을 출력하여 기타 제출자료와 함께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 ※ 신청자는 해당기관의 계획서 제출 마감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
 -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자의 온라인 신청여부 및 내용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기간 내에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확인 시 각종 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각종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보험 부담금이 지급됨.
 - **온라인 신청 기관 확인 시한 : 2006. 4. 28(금) 18:00까지**
 - 연구자로부터 제출 받은 강의·연구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및 신청 명단은 재단으로 별도 송부하지 않고 보관함.

5.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참여제한

가. 연구비 신청제한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당초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급으로 평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단, 1999년 이전 지원과제는 D급으로 평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C급으로 평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재단의 대학교수해외방문연구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의 박사후 국외연수지원,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의 신진인력방문연구지원 수혜자 중 연구기간(지원기간)이 중복되는 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의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며 부득이 신청하여야 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연구 참여제한

- 본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2과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함
- ※ 과제수행의 참여율 계상 : 연구자의 연구참여율을 연구책임자로 참여시 30% 이상,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 20% 이상으로 산정하되, 학술연구조성사업에서의 참여율은 총 50%를 넘을 수 없음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간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개발 연구과제 및 이공계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과 과학재단 이관사업 중 2004년도에 선정된 선도과학자육성지원연구, 우수여성과학자도약지원연구,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지원연구지원사업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는 연구참여 제한 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7. 1. 1. 이후인 선도기초과학연구실(ABRL)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기타 참여연구원은 연구참여 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 교육인적자원부 및 재단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동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 만료일이 2006. 12. 31. 이전인 과제는 연구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은 중지하고 신규지원 사업 연구비에서 지원함
- ※ 연구보조원은 1인 1과제에 한하여 재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연구기간이 겹치는 2과제에 동시 참여할 수 없음
- ※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선정에서 제외함
- ※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지원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최종 선정에서 제외함

IV. 심사 및 선정

1. 심사절차

단계별	심사구분	심 사 내 용	비고
1 단계	요건심사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재단
2 단계	전공심사	○ 보호학문의 적격 여부 ○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서 심사	전공심사단
3 단계	종합심사	○ 최종 선정과제 확정	종합심사위원회

2. 심사방법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등 검토

나. 제 2 단계 : 전공심사

- 심사방법 : 패널심사
- 심사내용 : 보호학문의 적격여부 및 강의·연구계획서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심사내용
강의 내용 (50)	강의개설의 필요성(30)	희귀분야 강좌개설 필요성	○ 희귀분야로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강의계획서 평가(20)	강의실적	○ 강의역량이 축적되어 있는가
		강의계획 및 연구계획과의 연관성	○ 강의와 연구가 연관되어 있는가
연구 주제 (25)	독창성(10)	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주제인가 ○ 고유한 지식체계를 창출하는가
		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	○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가 ○ 새로운 자료수집을 시도하는가
	학문발전 공헌도(15)	학문적 가치	○ 연구주제의 중요성이 큰가 ○ 새로운 지식 또는 이해의 지평을 창출하는가
		학문의 파급효과	○ 많은 후속 연구를 파생할 수 있는가 ○ 학문적 담론을 활성화하는가
		교육과의 연관성	○ 연구 결과가 교육내용으로서 중요성이 높은가
연구내 용 및 실현 가능성 (25)	연구내용 및 방법(15)	연구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	○ 연구 내용 및 방법은 적절한가
	선행연구(10)	선행연구의 검토	○ 중요한 선행연구들이 빠짐없이 검토되었는가 ○ 인용 및 참고문헌은 적절한가

※ 보호학문의 적격여부 통과(pass) 과제에 한하여 실시함

※ 상기 심사항목 및 내용은 학문분야별 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 3 단계 : 종합심사

- 3) 제 3 단계 : 종합심사
 - 심사주관 : 종합심사위원회
 - 심사내용
 - 전공심사 결과 검토
 - 예산 배정 및 선정기준 결정
 - 최종 선정과제 확정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선정과제를 공개하여 여타 연구비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V. 연구비 지급 및 관리

1. 연구비 지급

가.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을 경유하여 지급

나. 지급시기 : 지원과제 확정 후 지원결정 연구비 지급

다. 연구비 사용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2.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산학협력단장(또는 기관장)이 중앙 관리 하여야 함.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때
-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하였을 때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표절 등)로 하였을 때
- 기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 관리지침(연구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VI. 보고서 제출 및 평가

1.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 및 점검

가. 제출대상 : 2006년도 선정 과제

나.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

다.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라. 제출서류

- 2006년 2학기 강의결과보고서
- 2007년 1학기 강의개설 확인서
- 연구진행상황보고서

2.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가. 연구결과 보고

- 1)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2)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3) 제출 자료
 - 온라인 입력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결과보고서(재단 소정양식)

- 강의결과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함
- 연구요약문(국·영문)
 - 국문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파일 탑재
 - 연구결과보고서(자유형식, 원문파일 탑재)
- 4) 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당초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 신청을 제한함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작성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나. 최종결과 보고(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 1)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
 -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적 수준(A&HCI급·SSCI급·SCI&SCIE급)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 또는 전문학술저서로 출판하여야 함
- 2)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연구결과물은 인정하지 아니함
- 3)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야 함
 -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2006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6-000-○○○○○).”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HRD, Basic Research Promotion Fund) (KRF-2006-000-○○○○○).”

4) 연구결과 발표물 미제출자(게재논문 또는 저서)에 대한 관리

- 상기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과보고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C, D급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연구비 지원을 일정기간(C급 3년, D급 5년) 제한함

다. 연구결과 사후 관리

- 연구결과 논문 또는 저서 등에 관한 저작권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의 원문정보서비스 등으로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 단, 연구책임자 소속기관과 연구주관기관이 다를 경우, 연구주관기관이 상기 권리와 의무를 수행함

연구실적물 심사 결과 표절로 판명되어 징계조치를 요구받거나 징계를 당한 경우 5년간 연구비 신청 제한

라. 연구성과 Follow-up 시스템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 발표물 제출 후에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보고서, 특허, 기술, 발명, 세계인명사전 등재, 언론보도, 인력양성 실적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재단의 사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재단에 송부함

VII. 간접연구비 지원 : 지원대상 사업이 아님

VIII. 기타사항

- 심사 학문분야는 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선택하여

야 함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심사결과와 관련된 심사의견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심사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 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 사업 관련 문의 : 사회과학지원팀

Tel (02) 3460-5586 Fax (02) 3460-5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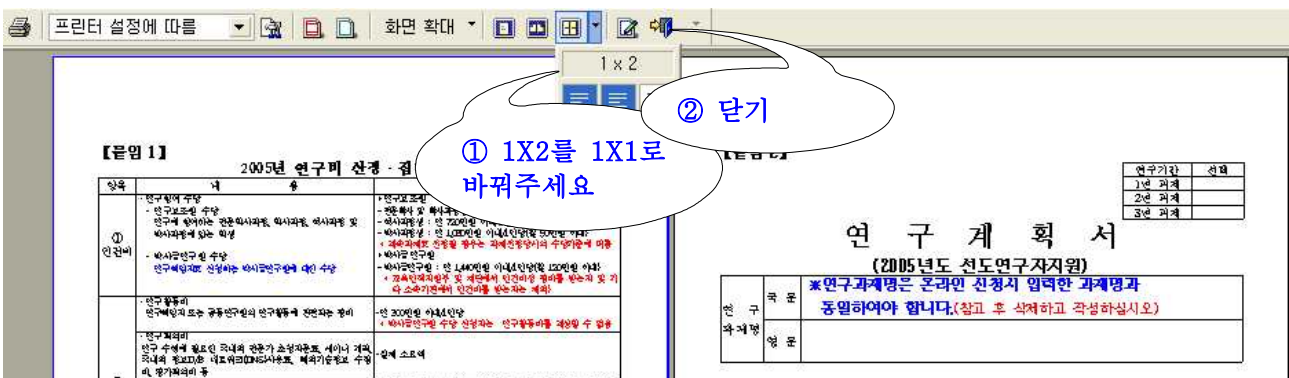
- 온라인 신청 전산관련문의 : 학술정보팀

Tel (02) 3460-5541~7 Fax (02) 3460-5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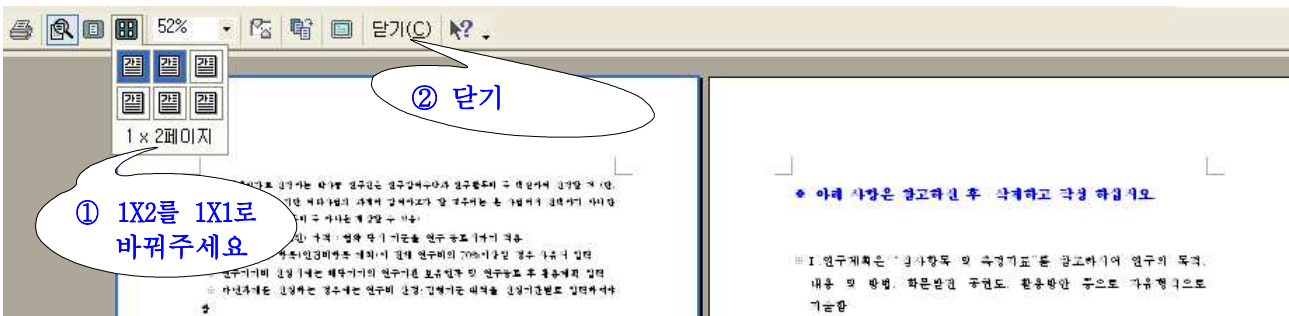
【강의 · 연구계획서 파일 탑재시 유의사항】

※ 강의 · 연구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시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에서 인쇄 화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 미리보기에서 아래와 같이 화면에 2쪽 이상이 보일 경우, 아래 각 그림의 ①과 ②를 차례대로 실행한 후 저장하여 주십시오. 저장 후에는 인쇄 미리보기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화면에 1쪽만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MS Word]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재단이 심사를 위하여 PDF파일로 변환하게 되는데 수정하지 않은 채 위 형태의 파일을 탑재하시면 글자 및 그림이 겹쳐보이게 되어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파일탑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만 해당)

항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인건비	·내부인건비 -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전문)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항목만 유지(동 사업 해당사항 없음) - 학사과정생 : 월 40만원 이내 / 1인당 - 석사과정생 : 월 80만원 이내 / 1인당 - 박사과정생 : 월 120만원 이내 / 1인당
	·외부인건비 * 박사급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재단 및 타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박사급연구원 : 연 1,920만원 / 1인당 - 전임연구인력 : 연 2,700만원 / 1인당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비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시작품제작비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 항목만 유지(동 사업 해당사항 없음)
	·여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 교통비 등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왕복 항공료와 1개월 이내 체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연구 수행에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 현상,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보험금, 각종 수수료, 사무용품 등	- 유인물비와 공공요금은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
	·기술정보활동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정보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평가회의비 및 각종 자료 구입비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소요액 지원 * <u>윤문교열비가 필요할 경우 기술정보활동비로 계상</u>
	·조사연구비 현지조사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조사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는 여비 비목에서 집행)	-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함
	·연구활동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외부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인정하지 않음
	·연구홍보비 (특허출원비의 경우 간접비에서 집행)	-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제 소요액

- ※ 연구책임자 또는 일반공동연구원으로 신청하는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수당과 연구활동비 중 택일하여 신청할 것 (단, 본 사업이외의 재단 여타사업의 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수당 혹은 연구활동비 중 하나를 계상할 수 있음)
- ※ 전임연구인력은 본 사업에서 연구활동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다만 본 사업 이외의 재단 여타사업의 과제에 참여시에는 본 사업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연구활동비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음.
- ※ 여비의 산정은 소속 기관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함
- ※ BK21 또는 NURI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연구보조원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신분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내에서 학술연구조성사업에의 연구보조원 참여 및 수당 수혜가 가능함(단, 학술연구조성사업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하여야 함)
- ※ 연구기기비 신청시에는 해당 기기의 연구기관 보유 현황 및 연구 종료 후 활용계획서 제출
- ※ 연구비 신청시에 특정 세부항목(“연구참여 수당” 제외)이 전체 연구비의 70% 초과시는 사유서 제출
- ※ 학술단체의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부득이 기자재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 활용계획서(비치장소, 사용계획, 연구종료 후 활용계획 등)를 연구지원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 2.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2006년도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강의·연구계획 추천서
(학과장 추천서)

강좌명	2006년 2학기 강좌명 :				
	2007년 1학기 강좌명 :				
강의내용	강의기관	대학(교)			학과 (학과장 :)
		전화 : ()		FAX : ()	
	강의학점	주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신청자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영문:)	전화	()	
<p>상기 신청자는 해당 보호학문분야에 있어서 연구의욕이 왕성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한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귀 재단의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적격자로 추천하며, 상기 연구자가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에 선정될 경우 1년간 해당 강의를 배정할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6. .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학(교) 학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학과장 성명 : (인)</p>					

※ 추천인은 신청자가 강의와 연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추천해야 함
(전일제 (full -time) 취업자 제외)

【붙임 3. 강의·연구계획서】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강의·연구계획서

(사업명 :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사업)

강좌명	2006년도 2학기 강좌명 : 2007년도 1학기 강좌명					
강의내용	강의학점		주 당 강의시간		강의과목 구 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연구과제명						

※ 2007년 1학기 강좌배정은 강좌명이 변경가능하나 연구진행상황보고서 제출시 개설
확정 되어야 함

I.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1. 최종 학위논문

논문제목	
학 위 구 분	석사 (), 박사 (), 기타()

*기타란은 “특이한 기술”, “과정수료”등의 사실을 기입 하십시오

-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은 재단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반드시 본인이 입력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II. 연구 및 강의실적

1. 연구실적

- 연구실적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단의 학술연구자 정보DB를 이용할 예정이니 온라인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본인이 입력·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강의실적

강 좌 명	강의기관	기 간	학 점	주당 강의시간	수강 인원	과 목 구 분	비 고

※ 과목구분은 전공필수·전공선택·교양중 택일하여 기재

※ 최근 3년간의 강의 실적 기재(2003년 1학기부터)

III. 강의 계획

※ 2006년 2학기와 2007년 1학기 강좌가 다를 경우에는 2개 학기의 강의계획을 작성함

※ 각 항목별로 작성하십시오.

◎ 강 좌 명 :

- 1) 강좌개설의 목적
(보호학문으로서의 필요성)
- 2) 강좌 관련 분야의 국내외 동향
- 3) 강좌 내용 및 방법
- 4) 기대효과 및 향후 활용 계획

IV. 연구계획

※ 아래 사항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고 작성 하십시오.

※ IV.연구계획은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내용 및 방법, 학문발전 공헌도, 활용방안 등으로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 연구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는 15매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구업적 요약문 제외)

※ 연구과제의 심사는 무기명심사(Blind Test)로 진행됩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자 및 연구 보조원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마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고문헌 목록에 있어 본인이 저자인 경우는 본인의 표기는 무방합니다.

Ⅱ. 연구추진계획

년 월	연구수행내용	비 고
2006. 9		
10		
11		
12		
2007. 1		
2		
3		
4		
5		
6		
7		
8		

※ 신청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